



빛나는 제주의 도약  
**2025 APEC 제주개최!**

위대한 도민시대,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**제주**

---

# 2024년 농업인단체 지방보조금 사업 홍보 계획

---

2024. 2.

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 
**(서부농업기술센터)**

# 2024년 농업인단체 지방보조금 사업 홍보 계획

- ◇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
- ◇ 시장개방 대응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량 있는 농업인 육성
- ◇ 새로운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 확산 및 기술농업의 조기 정착

## I. 추진근거

- 농촌진흥법 제18조(농업인 조직의 육성), 제25조(재정적 지원)
-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지원사업), 제6조(농어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) 제주특별자치도 4-H활동지원조례 등
-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(관련호: 예산담당관-19732(2023. 10. 18.))
-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
  -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시행령 및 시행규칙
  -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(행정안전부 훈령, 매년 개정)
  -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(행정자치부 예규 제174호, 2021. 9. 6. 개정)
  -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  -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운영·관리지침(2024. 1. 10.시행)

## II. 농업인단체 현황

(2024. 1. 31. 기준)

구 분	계	농촌지도사회	생활개선회	4-H본부
조직수	45개회	4읍면회	4읍면 (37개회)	4읍면회
회원수	974명	293명	450명	231명

□ 농업인단체육성 지원사업 지원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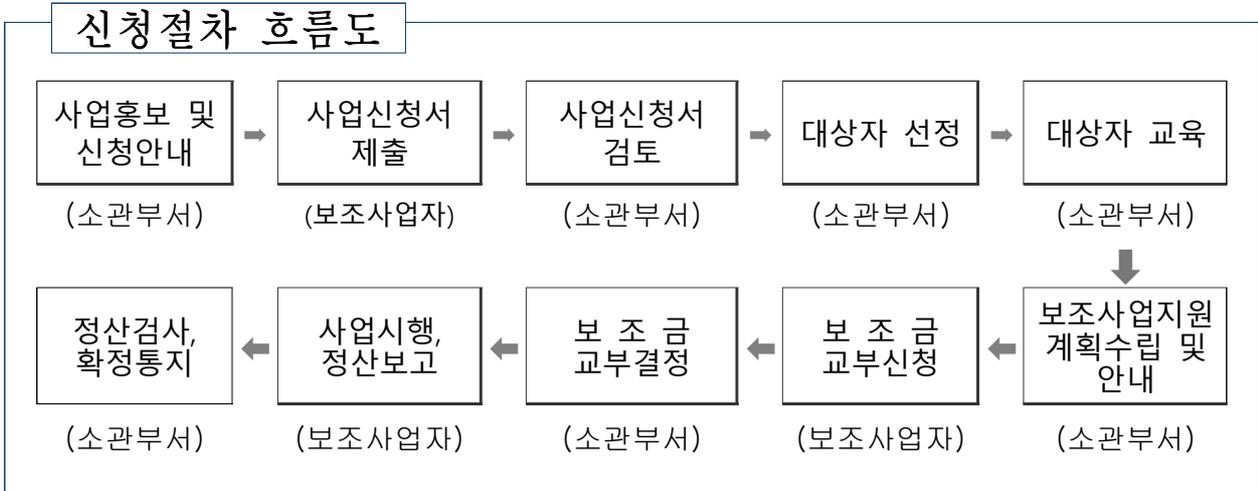
- 사업기간: 2024년 2월 ~ 12월
- 사업비: 40,000천원(보조 20,000, 자부담 20,000)
- 사업량: 4개읍면회(3개단체)
- 단체별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

사업명	사업량	사업내용	사업비(천원)			보조율
			계	보조금	자부담	
3개단체	4개회	-	40,000	20,000	20,000	
농촌지도자 도외 역량강화 현장교육	1개회	농업경쟁력 강화 정보 습득 도외 현장교육	10,000	5,000	5,000	50%
생활개선회 도외 역량강화 현장교육	2개회	농업경쟁력 강화 정보 습득 도외 현장교육	20,000	10,000	10,000	50%
4H본부 도외 역량 강화 현장교육	1개회	농업경쟁력 강화 정보 습득 도외 현장교육	10,000	5,000	5,000	50%

○ 주요내용

-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진농업 성공사례 현장교육
- 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신기술 보급 습득 및 농업기술 정보 수집
- 농촌융복합산업 농산물 가공·유통 우수 사업장 현장 사례 교육
- 단체 간 농업환경 변화 대응 회원 역량강화 교육

○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 절차



### III. 홍보 및 신청(접수) 계획

- 사업량: 3개단체 4개회
- 대상자: 서부지역 관내 읍면 농업인 단체(농촌지도자, 생활개선회, 4H본부)
- 신청기간: 2024. 2. 28. ~ 2024. 3. 3.(5일간)
- 신청 및 접수방법: 지원신청서 작성 후 방문 및 메일, 팩스 신청
  - 방문: 서부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☎760-7911
  - 메일: [hanhj0026@korea.kr](mailto:hanhj0026@korea.kr) ○ 팩스: ☎760-7979
- 신청방법: 신청서에 의거 작성 신청(양식붙임)
- 제출서류 : 서식참고

-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(서식1)
  - 신청사업 유형별 기준 보조율 반드시 준수(별첨)
- 사업계획서 1부 (서식2)
- 보조 설명자료(견적서 등) 각 1부
- 단체소개서 1부 (서식3)
-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
-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
- 회원명단(성명, 직책, 연락처, 생년월일, 성별, 주소 포함) 1부

※ 사본 제출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

### III.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대상(예산편성기준)

- 법령, 조례에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없는 사업
  - ※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, 포괄적·일반적 예산편성 금지
- 동일 단체의 유사·중복사업
  - 기관(도·행정시·읍면동)을 달리하거나, 동일 기관내 부서가 다르더라도 동일 단체의 유사·중복사업은 2개 이상의 기관(부서)에서 지원 불가
  - 동일 단체의 유사·중복사업은 2회 이상 나누어 지원 불가(년 1회에 한함)
-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·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·사업
- 개인 또는 단체의 영리목적 사업
- 예산에 편성된 목적 이외로 지원하는 사업
- 관련 법규 등에 의한 선행절차 및 개별 위원회 심의 등 미이행 사업
- 자본형성적 사업 성격으로 토지매입비 지원 사업
-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(주관 등)하는 행사
  -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선심성·낭비성 사업 억제
  - ※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, 이를 보조금으로 편성·집행하지 않도록 유의
-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
  - 일몰도래사업,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, 보조단체의 운영·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

#### 【 보조사업자의 자격 제한 】

- ▶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단체
  -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
    - ※ 의정회 및 행정동우회 등 친목성격 단체의 보조금은 지원 제외(단, 법 제17조 및 조례에 따라 공익적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내용 및 금액 등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은 가능)
  -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(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)
- ▶ 보조금 횡령 등 부정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를 제한